

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

<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>

I. 법 제11조제1항제1호

-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연번	위원회명	위원 총원(명)	공무수행 사인(명)	설치근거 규정(조항)
1	공정무역위원회	10	6	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(제10조)
2	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	11	9	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(제12조, 제13조)

II. 법 제11조제1항제2호

-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
연번	법인·단체·기관명	공무수행사인(명)	위임·위탁규정(조항)
1	(재)한국사회투자	14	o지방자치법 제104조 o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
2	서울산업진흥원	3	
3	(사)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	21	
4	개인	9	

※ 위임·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·단체·기관명을 '개인'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